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 조치 근거 마련〉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27호)
-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35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가. 민홍철의원안

1.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04.
3. 회 부 일 : 2024. 10. 07.

나. 천준호의원안

1. 제 안 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0.
3. 회 부 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민홍철의원안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 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순찰원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153조제1항제2호).

나. 천준호의원안

현행법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 여러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으로 하여금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안전순찰원¹⁾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등 위험방지 조치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민홍철의원안·천준호의원안 제58조의2 신설), 관련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임(민홍철의원안 제153조제1항제2호).

현행	민홍철의원안	천준호의원안
<신설>	제58조의2(위험방지 등의 조치에 대한 보조) ① 경찰청장은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8조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 보조 업무 수행 시기를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제58조의2(경찰공무원 보조자에 의한 위험방지 등의 조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임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자동차 통행의 일시 제한 2. 사고 차량 및 탑승자의 안전한 장소

1) 「도로법」 개정안 제57조의 2 신설에 따른 안전순찰원(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726호, 국토교통위원회 계류중)

경우와 도착 전으로 한정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 그 업무 보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보조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로의 이동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안전순찰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의 조치의

		<u>보조 업무를 수행하</u> <u>는</u> <u>안전순찰원은</u> <u>「형법」 제129조부</u> <u>터 제132조까지를 적</u> <u>용할 때에는 공무원</u> <u>으로 본다.</u> <u>⑦ 제5항에 따른 안</u> <u>전순찰원의 업무수행</u> <u>에 필요한 교육의 내</u> <u>용·주기·방법 등</u> <u>필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제1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 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생 략) 2. 제41조, 제47조 또 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 · 조치 또는 <u>명령</u> 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이를 거부 또 는 방해한 사람	제153조(벌칙)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u>명령(제5</u> <u>8조의2에 따라 경</u> <u>찰공무원의 업무를</u> <u>보조하는 한국도로</u> <u>공사 직원의 조치</u> <u>도 포함한다)</u> ----- -----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의 주체, 내용, 업무수행 시기, 명령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민홍철의원안	천준호의원안
주체	▸ 한국도로공사	▸ 도로법 개정안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
보조 업무	▸ 교통질서 유지 ▸ 대피 업무	▸ 통행 일시 제한 ▸ 사고 차량·탑승자 이동 조치
시기	▸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거나 도착하기 전	▸ 제한 없음
교육	▸ 위험방지 조치 보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공무원 의제	▸ 형법 제129조~제132조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	▸ 조치 불이행, 거부방해 시 징역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 조치 위반과 동일	-
기타	-	▸ 안전순찰원 조치에 따르도록 의무 부과 ▸ 안전순찰원이 조치 시 지체없이 경찰관에게 보고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통행 일시 금지,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²⁾

하지만 제한된 경찰 인력으로 인해 고속도로등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 현재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회사의 직원이 해당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실제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그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³⁾

2) 「도로교통법」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천재), 사변(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3)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고속도로 낙하물처리·사고 발생 시 현장 정리와 잔해물 수습 등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안전순찰원에 대한 신분·임무 등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시·도경찰청별 고속도로순찰대 인력 현황('24. 10월 기준)>

구분	계	경기 남부	충남	경북	전남	경남	강원	부산	전북	충북	인천	전북	경기 북부
인원	1,040	138	117	142	78	74	83	71	48	91	77	45	76

※ 자료 : 경찰청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운영현황('24. 10월 기준)>

구분	회사명	인원	장비	근무체계	노선	길이
계		268명	161대	2개 형태	45개 노선	5,009km
국영	한국도로공사	975명	465대	4조 3교대	27개 노선	4,119.9km
민자	22개사	268명	161대	2개 형태	16개 노선	889.1km

※ 자료 :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복장 및 안전순찰차 사진>



안전순찰원 복장

안전순찰차

※ 자료 : 경찰청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와 안전순찰원이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인력 한계를 보완하여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방지 조치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짐.⁴⁾

다만, 도로교통법상 위험방지 조치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현행법이 경찰공무원이나 일정 자격을 갖춘 경찰보조자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한 주체의 확대는 신중한 필요가 있음.

특히, 민간인 신분인 안전순찰원의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행위에 대한 과도한 권리·의무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민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⁵⁾

4) 유사입법례로는 사인(私人)에 해당하는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을 소방 ‘보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찾아볼 수 있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임무) ① 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 가. 화재 등 재난·재해 사고 현장에서의 질서 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
 - 나.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 다. 현장 지휘관의 보조
 - 라. 상황관리의 보조
 - 마. 그밖에 현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한편, 안전순찰원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지 않은 천준호의원안의 경우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바,

법안심사 시 ① 민간인인 안전순찰원 등에 대한 고속도로 위험방지 조치 권한 부여의 타당성, ② 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의 필요성 및 제재 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위험방지 조치가 국민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과 해당 조치 위반 시 최대 징역 6월로 도로교통법상 타 위반행위⁶⁾ 대비 처벌 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인 신분인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위험방지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임.

참고로, 천준호의원안은 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5723호)⁷⁾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5) 참고로 법제처는 2016년 2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주정차 단속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단속업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6)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의 신호·지시 위반 시에는 벌금 20만원에 처하고 있음.(「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발의, 의안번호 2205723)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안 제57조의2 신설.).

안 제57조의2(안전순찰원) ①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안전순찰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전순찰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로 및 부속시설에 대한 순회 점검 업무
2. 도로안전 저해요소 확인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안전순찰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구분		계	중 앙 선 침	과 속	안 전 처 리 불 이 행	안 전 처 리 미 확 보	기 타
2019년	사고(건)	4,223	28	51	2,773	1,064	307
	사망(명)	206	5	11	172	16	2
	부상(명)	9,521	72	152	6,307	2,435	555
2020년	사고(건)	4,039	33	63	2,586	1,083	274
	사망(명)	223	3	20	183	5	12
	부상(명)	8,389	60	126	5,610	2,108	485
2021년	사고(건)	4,883	24	-	3,018	1,278	563
	사망(명)	191	2	-	156	8	25
	부상(명)	9,708	43	-	6,078	2,519	1068
2022년	사고(건)	4,860	26	-	2,914	1,357	563
	사망(명)	184	0	-	163	10	11
	부상(명)	10,315	59	-	6,290	2,817	1149
2023년	사고(건)	5,220	31	-	3,068	1,565	556
	사망(명)	186	12	-	146	7	21
	부상(명)	11,400	53	-	6,883	3,438	1026

※ 2020년까지는 ‘과속’을 교통사고 원인으로 구분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를 관리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과속’을 교통사고 원인에서 제외하고, 별도 관리 중

▶ 고속도로 교통사고(과속) 현황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21년	70	19	172
2022년	56	9	167
2023년	61	8	139

※ 위 사고의 교통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이 과속 상태였다면 위 통계에 산입